

주주총회소집공고

2009년 3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황 영 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전 화) (02) 2073-7114
 (홈페이지)<http://www.kbf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장 (성 명) 최 규 설
 (전 화) (02) 2073-2845

		(주)국민은행에 대한 자본출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차	2008.12.18	2009년 그룹 경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09년 지주회사 예산편성(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국민은행 홍콩현지법인 관련 확인서한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차	2008.12.23	이사 보상기준(안)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보수규정 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반대사유: 평가지표에 대한 이견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석식 위원: 정기영, 조 담, 김 한, 김치중	2008.9.29	- 제1차 위원회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내부감시 담당 부사장 및 감사부장 임명에 대한 동의(안) ○ 감사업무규정 제정(안)	가결 가결 가결
		2008.10.17	- 제2차 위원회 [결의사항] ○ 2008~2010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안) ○ 감사업무규정 제정(안)	가결 가결
		2008.11.13	- 제3차 위원회 [심의사항] ○ 2008년도 3분기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 2008년도 3/4분기 결산검사 결과 [보고사항] ○ ELS, ELF 및 변액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사항 ○ 내부고발제도 운영현황 보고 ○ KB금융그룹 IFRS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2008.12.10	- 제4차 위원회 [결의사항] ○ 2008 사업연도 광저우, 하얼빈지점의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계약 사전승인(안) ○ 2009년도 감사업무 계획(안) [보고사항] ○ 공시실행 현황	가결 가결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기영 위원: 황영기, 임석식, 변보경, 조 담, 김치중	2008.11.28	- 제1차 위원회 [심의사항] ○ 이사회 규모의 적정성 검토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이사회 등 평가일정 및 평가내용 점검 ○ 2009년도 1/4분기 이사회 및 위원회 일정(안)	
경영전략위원회	위원장: 변보경 위원: 정기영, 황영기, 강정원, 김 한, Jacques Kemp, 강찬수	2008.10.30	- 제1차 위원회 [보고사항] ○ ING생명 잔여지분 매각추진 현황 ○ KB카드 분사관련 이슈사항 검토 ○ 2008.4Q 지주회사 판매관리비 분석	
		2008.12.11	- 제2차 위원회 [결의사항] ○ 2009년 경영계획(안) ○ 2009년 지주회사 예산편성(안) [보고사항] ○ KB카드 분사관련 추가검토	가결 가결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조 담 위원: Jacques Kemp, 김중희, 임석식, 함상문	2008.11.14	- 제1차 위원회 [결의사항] ○ 리스크관리규정 제정(안) ○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 제정(안) [보고사항] ○ KB국민은행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AMA) 승인획득 보고 ○ 주요 계열사 리스크 현황 보고 ○ KB투자증권 리스크관리 대책 ○ 그룹 리스크관리 방안 보고 ○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통합보험 가입 계획 ○ 부동산 PF대출 신용도 점검 및 리스크관리 방안 보고 ○ BCC 유동성 및 건전성 관련 보고	가결 가결
		2008.12.10	- 제2차 위원회 [결의사항] ○ 2009년 그룹 Risk Appetite 설정(안) ○ 2009년 그룹 경제적 자본한도 설정(안) [보고사항] ○ 주요 계열사 리스크 현황 보고 ○ 조선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 방안 ○ 통합보험 Restructuring (안)	가결 가결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김치중 위원: 변보경, 함상문, 강찬수	2008.10.20	- 제1차 위원회 [보고사항] ○ KB금융지주 성과관리체계 방향성 보고 [심의사항] ○ 이사평가제도 수립일정 (안)	

			○ 기타 이사평가보상제도 수립관련 논의 등(안)	
	2008.11.10	- 제2차 위원회 [보고사항] ○ 이사 평가 및 보상제도 수립 컨설팅 1차 보고 [심의사항] ○ 이사평가보상제도 수립 일정(안)		
	2008.11.27	- 제3차 위원회 [보고사항] ○ 이사 평가 및 보상제도 수립 컨설팅 2차 보고		
	2008.12.11	- 제4차 위원회 [보고사항] ○ 이사 평가 및 보상제도 수립 컨설팅 3차 보고		
	2008.12.18	- 제5차 위원회 [보고사항] ○ 이사 평가 및 보상제도 수립 컨설팅 4차 보고 [심의사항] ○ 사외이사 회의비		
	2008.12.23	- 제6차 위원회 [결의사항] ○ 이사 보상기준(안) ○ 2009년 이사 경영성과 평가기준 및 단기성과급 지급기준(안) [심의사항] ○ 2008년 은행장 비계량 평가 외부용역관련 심의		가결 가결

※ 2008년 KB금융지주 이사회활동 자체 평가결과

○ 종합평점 : 7.9점(10점 만점)

- 이사회 구성 및 효율성 : 7.8점
- 이사회 기능과 역할 : 8.3점
- 이사회 책임 : 7.4점
- 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관계 : 8.3점

○ KB금융지주 이사회는 2008년도 이사회 활동을 4개 부문 20개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자체 평가한 결과, 이사회 구성 및 효율성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토의 분위기 보장',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 등 항목은 높은 점수를 받아 활발한 이사회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회의 시간 소요 및 효율성'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사회 기능과 역할 부문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지주회사의 중장기 발전 및 계획에 대한 충분한 토의' 및 '경영진에 대한 공정한 평가'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음

- 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관계 부문도 높은 점수를 받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채무보고서의 충실성'항목이 좋은 점수를 받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9	2,000	183	20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상임이사 보수를 포함한 승인금액임
- * 주총승인금액란에는 2008년 8월 25일 (주)국민은행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포괄적 주식이전에 관한 주식이전 계획' 상의 이사보수 한도금액(2008.9.29 ~ 2008.12.31)을 기재하였음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거시경제 전망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이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세계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도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유가안정,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건설경기 부양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가계부채 불안, 금융시장 경색, 세계경기 둔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세계적 저금리 정책 공조 및 경기침체, 내수부진에 따른 자금수요 저하로 정책금리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간,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의 금리 격차는 확대될 것이며 미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2) 규제/감독/제도 변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 안정, 금융규제 및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규제개혁'과 '적정 수준의 규제'가 병행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점 공동이용 규제 완화, 고객정보 공유범위 확대, 복합금융상품 등이 허용되고 금융상품 전문 판매업,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같은 신규 영업모델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검토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성장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험업의 경우 2009년 4월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고, 증권업은 리스크중심 감독(RBS) 체제를 구축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건전성 규제는 300%에서 200%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리스크관리 및 건전성 규제환경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상품 설명의무 및 판매책임이 강화되고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피해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보호제도,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및 지원 체계가 구축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층 강화된 정책들이 시행되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3) 금융시장의 변화

금융위기와 자본시장법의 시행이 금융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두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됨에 따라 부실자산이 양산되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실 금융기관이 국유화 되거나 우량 금융회사로 매각되고 금융공기업은 민영화되는 과정을 겪는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규제방식이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판매권유자 제도 등 상품 유통채널이 확대될 것입니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의 금융투자업의 이업종간 겸영이 확대되고 대형화, 겸업화를 위한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간 인수, 합병이 활성화되며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대 축으로 재편될 금융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금융그룹들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경쟁사 동향

주요 경쟁금융그룹들은 리스크 관리와 내실경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비유기적 성장을 통한 성장기반 확대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는 은행부문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금융업 전반의 M&A Initiative 확보에 주력하되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08년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금융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는 등 거시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전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이에 KB금융그룹은 2008년 9월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계기로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구축하고 해외네트워크 확충, 브랜드 파워 강화,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등 내부역량 강화와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의 2008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한 1조 8,7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자부문 이익(4.6%)과 영업외손익(41.6%)은 증가하였으나, 수수료수익 등 비이자부문 이익 감소와 기업구조조정 및 건전성 악화에 따른 충당금전입액 증가(전년 동기 대비 1조 4,024억원)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실적신탁 및 관리자산을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한 320조원으로, 은행 부문 자산은 원화대출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266조원이며 비은행 부문은 KB투자증권 인수 및 영업력 강화 노력에 따라 300% 증가해 3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관리자산은 51조원으로 성공적 영업활동에 힘입어 전년대비 20.9% 증가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별도 공시대상 사업부문이 없습니다. 다만, 공시대상 자회사로는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현재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당사 외에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있으며 사업 포트폴리오와 계열사 구조가 상이하고 기타 금융기관과의 관련성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상기 "I.사업의 개요-가. 업계의 현황- (3) 금융시장의 변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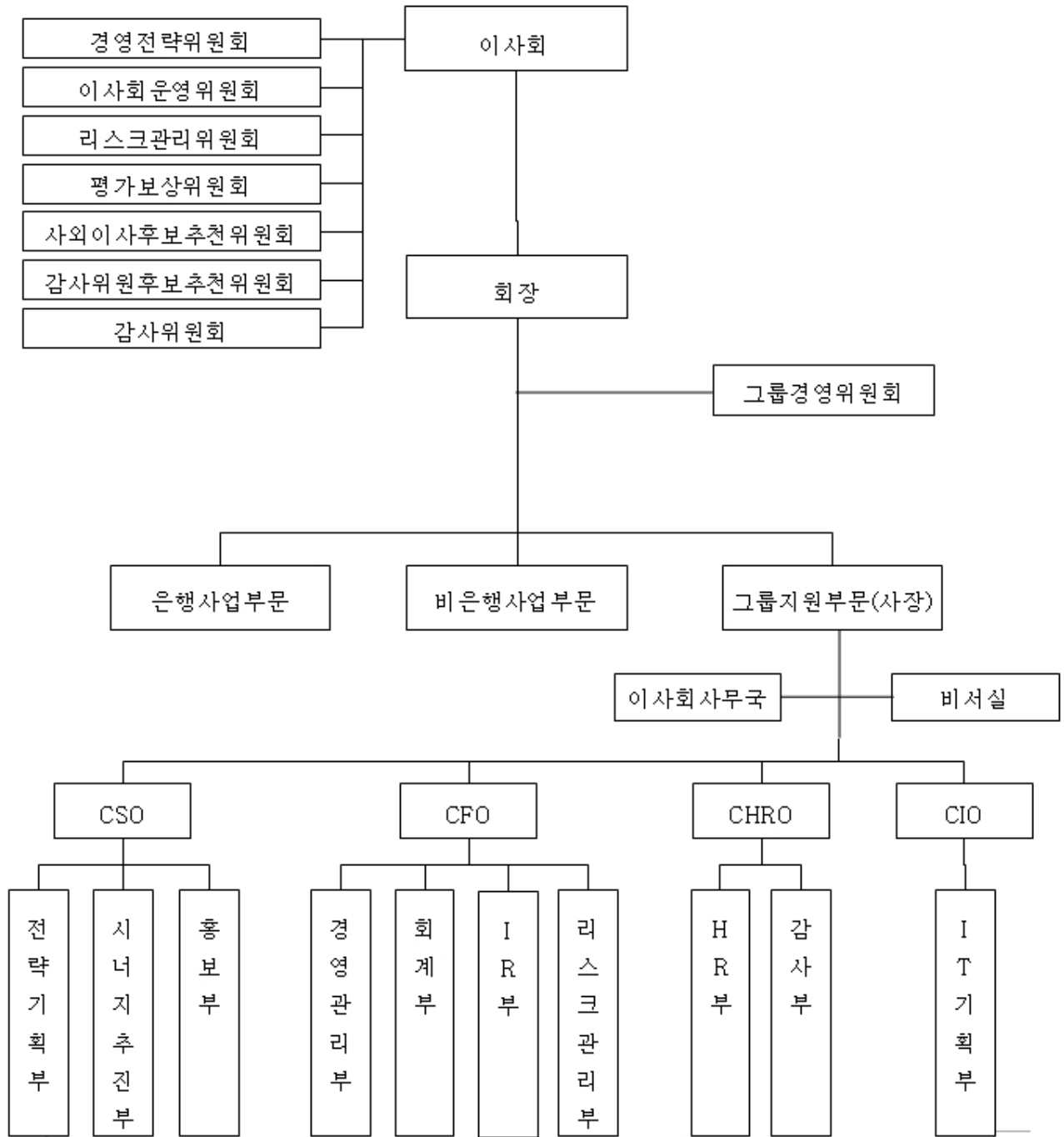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

(3부문 10부 1국 1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내용중 "I.사업의 개요 -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제 1 기 2008.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 기	제 XX 기
<자산>		
I. 현금 및 예치금	1,849	-
1. 예치금	1,849	-
II. 유가증권	16,345,052	-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6,345,052	-
III. 대출채권	199,000	-
(대손충당금)	(1,000)	-
1. 대출금	200,000	-
IV. 유형자산	3,214	-
1. 업무용동산	3,583	-
(감가상각누계액)	(369)	-
V. 기타자산	18,904	-
1. 예치보증금	13,825	-
2. 미수금	2	-

3. 미수수익	1,225	-
4. 선급비용	1,607	-
5. 무형자산	2,009	-
6. 잡자산	236	-
자산총계	16,568,019	-
<부채>		
I. 차입부채	730,572	-
1. 차입금	232,000	-
2. 사채	5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1,428)	-
II. 기타부채	8,836	-
1. 미지급금	226	-
2. 미지급비용	2,629	-
3. 이연법인세부채	4,649	-
4. 수입제세	171	-
5. 퇴직급여충당부채	3,346	-
(퇴직연금운용자산)	(2,185)	-
부채총계	739,408	-
<자본>		
I. 자본금	1,781,758	-
1. 보통주자본금	1,781,758	-
II. 자본잉여금	15,473,511	-
1. 주식발행초과금	11,265,413	-
2. 지분법자본잉여금변동	4,208,098	-
III. 자본조정	(3,145,102)	-
1. 지분법자본조정변동	(3,145,102)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87,503	-
1. 자본법자본변동	1,094,351	-
2. 부의지분법자본변동	(6,848)	-

V. 이익잉여금	630,941	-
1. 미처분이익잉여금	630,941	-
자본총계	15,828,611	-
부채와 자본총계	16,568,019	-

-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 1 기 (2008. 9. 29 부터 2008. 12. 31 까지)

제 XX 기 (XXXX. XX. XX 부터 XXXX. XX. XX 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 기	제 XX 기
I. 영업수익	635,268	-
1. 지분법이익	633,981	-
2. 이자수익	1,287	-
가. 예치금이자	689	-
나. 대출채권이자	598	-
II. 영업비용	23,197	-
1. 지분법손실	10,096	-
2. 이자비용	3,063	-
가. 차입금이자	990	-
나. 사채이자	2,073	-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1,000	-
가. 대손상각비	1,000	-
4. 수수료비용	2,270	-
5. 판매비와관리비	6,768	-
가. 급여	3,093	-
나. 퇴직급여	347	-
다. 복리후생비	446	-

라. 임차료	234	-
마. 감가상각비	369	-
바. 무형자산상각비	73	-
사. 세금과공과	28	-
아. 광고선전비	902	-
자. 경상개발비	7	-
차. 기타	1,269	-
III. 영업이익	612,071	-
IV. 영업외수익	23	-
1. 기타영업외수익	23	-
V. 영업외비용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12,094	-
VII. 법인세비용	167	-
VIII. 당기순이익	611,927	-
IX. 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2,134	-
2. 희석주당순이익	2,134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 기 (2008. 9. 29 부터 2008. 12. 31 까지)

제 XX 기 (XXXX. XX. XX 부터 XXXX. XX. XX 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 기	제 XX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630,941	-
1. 지분법적용에 따른 잉여금 변동	19,014	-
2. 당기순이익	611,927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629,200	-

1. 이익준비금	61,200	-
2. 임의적립금	568,000	-
3. 배당금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741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 조 ~ 제 12 조 (생략)	제 1 조 ~ 제 12 조 (현행과 동일)	
제 13 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 2. <u>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u>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u>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u>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증권거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u>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13 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 2.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u>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u>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u>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u>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현행과 동일)	-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 -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 -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 -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

<p>5. (생략)</p> <p>6. (생략)</p> <p>제 14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이 회사 또는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u>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u>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아닌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제1항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u>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p> <p>2. <u>주요주주(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u>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p> <p>3.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u>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u> 바에 따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⑥ (생략)</p> <p>⑦ (생략)</p> <p>⑧ (생략)</p> <p>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p>	<p>6. (현행과 동일)</p> <p>제 14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u>임직원(상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u>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u>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u>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아닌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u>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제1항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u></p> <p>1. <u>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p> <p>2. <u>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u>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p> <p>3.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현행과 동일).</p> <p>⑤ <u>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u> 바에 따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⑥ (현행과 동일)</p> <p>⑦ (현행과 동일)</p> <p>⑧ (현행과 동일)</p> <p>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현행과 동일)</p> <p>2. <u>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u></p>	<p>-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하여 문구 정리함</p> <p>-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p>
---	--	---

<p>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u></p> <p>3. (생략)</p> <p>4. <u>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조치를 받거나 동법에 따른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u></p> <p>5. (생략)</p> <p>제 15 조 ~ 제 24 조 (생략)</p> <p>제 25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생략)</p> <p>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신문과 동아일보에 2회 이상 <u>광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u>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울신문과 동아일보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순으로 게재한다.</p> <p>제 26조 ~ 제 36 조 (생략)</p> <p>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기준)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p> <p>1. <u>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u></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경우</p> <p>3. (현행과 동일)</p> <p>4. (삭제)</p> <p>4. (현행과 동일)</p> <p>제 15 조 ~ 제 24 조 (현행과 같음)</p> <p>제 25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현행과 동일)</p> <p>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신문과 동아일보에 2회 이상 <u>광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광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u>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울신문과 동아일보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순으로 게재한다.</p> <p>제 26 조 ~ 제 36 조 (현행과 같음)</p> <p>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기준)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p> <p>1. <u>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u></p> <p>2. (현행과 동일)</p> <p>3. (현행과 동일)</p> <p>4. (현행과 동일)</p> <p>5. (현행과 동일)</p> <p>제 38 조 ~ 제 43 조 (현행과 동일)</p> <p>제 44 조(이사회 결의방법)</p> <p>① <u>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u></p>	<p>- 법률상 표현 문구 변경에 따라 조정</p> <p>-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 호 체상</p> <p>- 상법에서 공고방법을 일간신문 외에 전자공시시스템을 추가로 인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p>
---	---	--

<p>제 38 조 ~ 제 43 조 (생략)</p> <p>제 44 조(이사회 결의방법)</p> <p>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대표이사의 선임, <u>감사위원회 결의사항</u>을 변경결의하는 경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 45 조 ~ 제 49 조 (생략)</p> <p>제 50 조(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하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u>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서</u>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임직원으로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5. (생략)</p> <p>제 51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생략)</p> <p>(신설)</p> <p>제 52 조 ~ 제 56 조 (생략)</p> <p>제 57 조(주식의 소각)</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할 것</p> <p>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 또는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p>	<p>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대표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p>제 45 조 ~ 제 49 조 (현행과 동일)</p> <p>제 50 조(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하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p> <p>1. (현행과 동일)</p> <p>2. (현행과 동일)</p> <p>3. (현행과 동일)</p> <p>4. <u>주권상장법인에서</u>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임직원으로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5. (현행과 동일)</p> <p>제 51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현행과 동일)</p> <p>⑤ (현행과 동일)</p> <p>⑥ (현행과 동일)</p> <p>⑦ (현행과 동일)</p> <p>⑧ <u>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u> 의할 수 없다.</p> <p>제 52 조 ~ 제 56 조 (현행과 같음)</p> <p>제 57 조(주식의 소각)</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할 것</p> <p>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 또는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p>	<p>-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 상법(제415조의2 제6항)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삭제</p> <p>-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p>
--	--	--

<p>우에는 <u>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서</u>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할 것</p> <p>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 또는 소각할 주식이액의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 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u>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u></p> <p>제 58 조 (생략)</p> <p>제 59 조(분기배당)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에 결의로 하 되, 분기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서는 <u>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u>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60 조 ~ 제 61 조 (생략)</p> <p>(신설)</p>	<p>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u></p> <p>제 58 조 (현행과 같음)</p> <p>제 59 조(분기배당)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에 결의로 하 되, 분기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서는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u>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60 조 ~ 제 61 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u>제 1 조(시행일)</u>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 상법(제415조의2 제6항)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신설</p> <p>-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 근거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 부칙 신설</p>
---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변보경	1953년 08월 09일	사외이사 후보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조재목	1961년 01월 05일	사외이사 후보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주요경력	최종학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변보경 (중임) 임기 1년	코오롱아이넷 대표이사 사장	- 한국IBM 사업본부장 - LG-IBM PC 시스템사업 본부장/상무 - LG-IBM PC 대표이사 사장 - 코오롱정보통신 대표이사 사장 - 코오롱베니트 공동대표이사 사장	- 경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미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Executive MBA 프로그램 이수	-
조재목 (신임) 임기 3년	에이스리서치센터 대표이사	- 계명대학교 강사 - LG그룹 신상품개발 리서치 전문강사 - 대구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 서울특별시 조사자문위원	- 영남고등학교 - 계명대학교 심리학 학사 - 계명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석사 - 계명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박사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 담	1952년 08월 01일	사외이사인 후보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석식	1953년 07월 17일	사외이사인 후보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변보경	1953년 08월 09일	사외이사인 후보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김치중	1955년 12월 11일	사외이사인 후보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강찬수	1961년 11월 23일	사외이사인 후보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5)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주요경력	최종학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조 담 (중임) 임기 1년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삼성화재보험 자문교수 - 미 펜실베니아대학교 교환교수 - 한국 재무관리학회 회장	- 광주제일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임석식 (중임) 임기 1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캐나다 알버타대학교 조교수 -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경북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KAIST 산업공학 석사 - 미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미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변보경 (신임) 임기 1년	코오롱아이넷 대표이사 사장	- 한국IBM 사업본부장 - LG-IBM PC 시스템사업 본부장/상무 - LG-IBM PC 대표이사 사장 - 코오롱정보통신 대표이사 사 장- 코오롱베니트 공동대표이 사 사장	- 경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미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Executive MBA 프로그램 이 수	-
김치중 (중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양정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임기 1년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특허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강찬수 (신임) 임기 1년	Kang & Company 대표 이사 회장	- BT Wolfensohn 상무이사 - 서울증권 대표이사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 미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학사 - 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MBA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2명 (9명)	12명 (9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억원	50억원 (기타 참고사항 참조)

주) 전기에는 2008년 8월 25일 (주)국민은행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포괄적 주식이전에 관한 주식이전 계획' 상의 이사보수 한도금액(2008.9.29 ~ 2008.12.31)을 기재하였음.

※ 기타 참고사항

제2기(2009회계연도) 이사 전원에 대한 연간보수한도는 금50억원으로 하며, 지급 기준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이와 별도로 이사의 임기에 걸쳐 부여하는 장기인센티브로서 자사주 또는 그 가액을 보수로서 부여하는 경우, 2008년 9월 29일부터 2011년 9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총250,000주를 한도로 부여하되, 부여 및 지급의 기준과 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한다.